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변경사항

1.펀드명 :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정정사유 :

1)규약

- ①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②환매수수료 삭제
- ③투자대상 취득한도 일부 변경

2)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①최근현황 업데이트
-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③환매수수료 삭제
- ④투자대상 취득한도 일부 변경
- ⑤투자전략 일부 변경

3. 변경내용

<규약>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투자대상 취득한도 일부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기재생략)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기재생략)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증권등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9. (기재 생략)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9. (기재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7. (기재 생략) 8. (기재 생략)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 마. (기재 생략) 9. ~10. (기재 생략)	1. ~7. (현행과 동일) 8. (현행과 동일)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u>)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u> 나. ~ 마. (현행과 동일) 9. ~10.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기재 생략)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기재 생략) ③~④(기재 생략)	①(현행과 동일)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u>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u>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현행과 동일) ③~④(현행과 동일)
제26조(환매업무)	환매수수료 삭제	①~⑥ (기재 생략) ⑦판매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⑧~⑨ (기재 생략)	①~⑥ (현행과 동일) <u>⑦판매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u> ⑧~⑨ (현행과 동일)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①(기재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 미만: 이익금의 30% ③(기재 생략)	<u>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환매수수료 삭제	①~③ (기재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③ (현행과 동일) <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u>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①~② (기재 생략)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⑤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①~② (현행과 동일) <u>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u> <u>④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u>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한다.	을 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환매수수료 없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투자전략 일부 변경 및 최근현황 업데이트	(1)투자전략 1. 투자목적 <붙임1> 참조 2. 투자전략 <붙임3> 참조 3. 운용전문인력 - 4. 투자실적 -	(1)투자전략 1. 투자목적 <붙임2> 참조 2. 투자전략 <붙임4> 참조 3.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최근현황 업데이트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붙임5> 참조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붙임6>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사항 추가	추가	2018.02.13. ①최근현황 업데이트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환매수수료 삭제 ④투자대상 취득한도 일부 변경 ⑤투자전략 일부 변경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전략 일부 변경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일부 변경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대상 주식: 30% 이하(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사항 변경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⑨,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가. 투자대상 주식: 30% 이하(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사항 변경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⑨,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p>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집합투자자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투자전략 일부 변경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투자전략 <붙임3> 참조</p> <p>(2)위험관리 <붙임5> 참조</p>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투자전략 <붙임4> 참조</p> <p>(2)위험관리 <붙임6> 참조</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환매수수료 삭제	<p>나. 환매 (3)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p>	<p>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p>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p>	<p>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최근현황 업데이트</p>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	최근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	최근현황	가. 연평균 수익률	가. 연평균 수익률

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환매수수료 없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투자전략 일부 변경 및 최근현황 업데이트	(1)투자전략 1. 투자목적 <붙임1> 참조 2. 투자전략 <붙임3> 참조 3. 운용전문인력 - 4. 투자실적 -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붙임5> 참조	(1)투자전략 1. 투자목적 <붙임2> 참조 2. 투자전략 <붙임4> 참조 3.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최근현황 업데이트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붙임6> 참조

<붙임1>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관련 ETF"라 함)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붙임2>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관련 ETF"라 함)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붙임3>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ETF 운용전략>

① ETF 분할매매전략

▶ 개요

전략 구분	최적 시장상황	전략개요	전략실행 특징
[전략1] 변동성 매매	변동성 장세	주가지수 하락 시 매수 주가지수 상승 시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 ETF 분할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ETF 분할 매도
[전략2] 턴어라운드 매매	시장의 Turn-around 국면	하락하던 주가지수 반등 확인 → 매수 상승하던 주가지수 반락 확인 → 매도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의 돌파흐름 발생시 변동성 매매전략의 보완 역할

▶ 매매원칙

- 박스권 분석 및 매매시그널을 바탕으로 한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 이행
- 주가지수 ETF만을 사용하여 포지션 구축(KODEX200, TIGER200, KODEX 레버리지 등)
- 장중 매매를 지양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 전후에 신호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

② 마켓타이밍 전략

구분	전략실행 방법
실행전략 개요	주가지수(KOSPI200)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통한 펀드의 노출수준 관리 시장 상승 시 노출도 확대, 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노출도 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비중 확대, 변동성 확대 시 전략 실행 중단, 포지션 정리
노출 비중	-10% ~ +10% (국내주식, ETF,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 이용)
실행 주기	상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시장의 기회 발생시에만 단기적으로 실행 및 포지션 청산

③ Event 전략

- 블록 트레이딩 : 대주주 등 지분매각 시 단기매매이익 추구, 우량기업 유상증자 참여 등
- 선별적 공모주 투자 등

<채권 운용전략>

① 채권 대차 전략

보유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를 빌려 매도하고 이 자금으로 크레딧 채권등을 매수하여 수익 추구

②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전략

보유 채권을 담보로 낮은 레포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시 채권(공사채, 특수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보유기간 동안 일정 수익률을 확보하는 전략

③ 개별종목 선정 전략

독자적인 크레딧 분석으로 저평가된 채권 매수 및 고평가된 채권 매도

④ Event Driven 전략

자금흐름 및 채권수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 활용전략

<붙임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ETF 운용전략>

① ETF 분할매매전략

▶ 개요

전략 구분	최적 시장상황	전략개요	전략실행 특징
턴어라운드 매매	시장의 Turn-around 국면	하락하던 주가지수 반등 확인 → 매수 상승하던 주가지수 반락 확인 → 매도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의 돌파흐름 발생시 변동성 매매전략의 보완 역할

▶ 매매원칙

- 박스권 분석 및 매매시그널을 바탕으로 한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 이행
-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만을 사용하여 포지션 구축(KODEX200, TIGER200, KODEX 레버리지, TIGER미국S&P500선물, KODEX미국S&P500선물 등)
- 장중 매매를 지양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 전후에 신호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

② 마켓타이밍 전략

구분	전략실행 방법
실행전략 개요	주가지수(KOSPI200)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통한 펀드의 노출수준 관리 시장 상승 시 노출도 확대, 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노출도 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비중 확대, 변동성 확대 시 전략 실행 중단, 포지션 정리
노출 비중	-10% ~ +10%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 이용)
실행 주기	상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시장의 기회 발생시에만 단기적으로 실행 및 포지션 청산

③ Event 전략

- 블록 트레이딩 : 대주주 등 지분매각 시 단기매매이익 추구, 우량기업 유상증자 참여 등
- 선별적 공모주 투자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A-이상) 등 기회 발생 시 제한적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
- 주식관련사채와 해당 주식(또는 주식선물)을 활용하여 차익거래 전략
(예, A전환사채의 가격이 오르고 해당 주가는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전환사채 매수, 주식매도)

④ 롱숏 전략

- 기회 발생 시에만 운용 (상시운용 아님)
- 종목선정: 펀더멘털분석 + 수급분석 + 기술적분석 이용
-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또는 지수선물 매도)

- 전략예시 -



<채권 운용전략>

① 개별종목 선정 전략

독자적인 크레딧 분석으로 저평가된 채권 매수 및 고평가된 채권 매도

② Event Driven 전략

자금흐름 및 채권수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 활용전략

<붙임 5>

- ① ETF 분할매매전략의 주식관련 ETF 매매 시 운용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박스권 분석 및 매매시그널에 바탕하여 매매합니다.
- ② ~④ (기재생략)

<붙임 6>

- ① ETF 분할매매전략의 주식관련 ETF 매매 시 **매매원칙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행합니다.**
- ② ~④ (현행과 동일)